

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

-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등록지의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20만원).
-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등록지의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과태료 20만원).
-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40만원).

건설기계 등록·검사증



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

4. 건설기계 검사란					5. 등록사항 변경란			
구분	검사일	유효기간 (까지)	검사기관	담당자성명	인번	변경일자	변경사항	확인
신규등록일 : 2011-11-04								
신규(검사)	2011-11-04	2014-11-03	신규(부활) 등록관청					
정기검사	2014-11-25	2017-11-03	안전관리원충북본검사소	조미현				
정기검사	2017-11-01	2020-11-03	안전관리원경기본검사소	손용석				
정기검사	2020-11-04	2023-11-03	안전관리원강원영주검사소	장종근				
* 유의사항 :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. * 수입건설기계의 제작연월일의 표기는 수입신고필증의 일행일을 기준으로 하며, 중고수입건설기계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								